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축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의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인수를 위한 인도·인수사무소는 시·도지사가 설치하여야 하고,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도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ㄹ. 시·도지사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는 경우, 인도·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장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실을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2년마다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④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의 설치 등 민방위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 ② 시·도지사가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에는 지하 양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 ②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 ④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를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문 1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 12. 15.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충청북도 A군 B읍에 주소를 둔 甲은 통·리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읍의 읍장이 2021. 12. 10.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② B읍의 읍장이 甲에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甲이 교육훈련 통지를 받고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 ④ 甲이 직계존속의 장례로 인해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면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B읍의 읍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6. 다음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큰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9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장애등급 제4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은 300만 원이고,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으로, 양자 모두 최근 3년간 변화가 없다.

- ① 8,100만 원
- ② 9,000만 원
- ③ 1억 800만 원
- ④ 1억 1,700만 원

문 21.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장공비가 2021. 11. 1. 경기도 A 지역에 침투하였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그 무장공비의 도주로 예상되는 경기도 B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2021. 11. 3. B 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 명령을 하였다. B 지역 주민 乙은 피난 명령으로 인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었다. 甲은 2021. 11. 7. 乙에게 해당 농작물의 시가를 100만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① 甲은 피난 명령을 하려면 피난 명령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피난 명령 내용을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乙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乙이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2.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장애보상금을 받았다가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 ②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임군 부대의 장으로부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甲 ~ 丁에게 해당하는 법정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甲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乙을 검문하자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대원 丙이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한 경우
- 전시·사변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戊가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보 기> —————

- ㄱ. 甲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乙은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 ㄴ. 甲에 대한 법정형보다 戊에 대한 법정형이 더 경하다.
- ㄷ. 乙의 행위가 무장공비와 교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乙과 丁에 대한 법정형은 같다.
- ㄹ. 丙과 달리 戊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26.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정형에 구류가 포함된다.
- ㄴ.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ㄷ. 무장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진압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 ㄹ.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이 된다.
-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 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